

과업내용 (확정/변경) 종합 심의 결과서 (제25조 및 제26조 관련)

사업명		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		발주부서	대중교통과
추진 단계명	확정 심의	☒ 발주 전 ☐ 계약 전		확정요청번호	20251105-05
	변경 심의	☐ 분석 ☐ 설계 ☐ 구현 ☐ 시험		변경요청번호	
제 목		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과업내용 확정 심의			
심 의 일 자		2025년 11월 5일		심 의 장 소	서면심의
심 의 결 과		☒ 승인 ☐ 불가 ☐ 조건부 승인			
[검토의견] 『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』의 제안요청서(과업지시서), 산출내역서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, 과업내용 및 사업금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산출 되었으므로 과업내용을 원안과 같이 승인함. ※ 기타 의견 - 향후 센터장비 및 현장장비 목록 식별 및 유지관리요율(금액) 등 산출내역 보완 권고 -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하니 행정효율 및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검토 권고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. 2025년 11월 5일 위 원 권 상 욱 (서명) 위 원 조 창 희 (서명) 위 원 이 상 수 (서명) 위원장 강 복 순 (서명) 김해시장 귀하					

※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[별지 제11호서식]

과업내용 (확정/변경) 종합 심의 결과서(제25조 및 제26조 관련)

사업명		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		발주부서	대중교통과
추진 단계명	확정 심의	[√] 발주 전 [] 계약 전		확정요청번호	20251105-05
	변경 심의	[] 분석 [] 구현	[] 설계 [] 시험	변경요청번호	
제 목		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과업내용 확정 심의			
심 의 일 자		2025년 11월 5일		심 의 장 소	서면심의
심 의 결 과		[√] 승인 [] 불가 [] 조건부 승인			
[검토의견] 『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』의 제안요청서(과업지시서), 산출내역서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, 과업내용 및 사업금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산출 되었으므로 과업내용을 원안과 같이 승인함. ※ 기타 의견 - 향후 센터장비 및 현장장비 목록 식별 및 유지관리요율(금액) 등 산출내역 보완 권고 -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하니 행정효율 및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검토 권고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. 2025년 11월 5일 위 원 권 상 옥 (서명) 위 원 조 창 희 (서명) 위 원 이 상 수 (서명) 위원장 강 복 순 (서명) 김해시장 귀하					

과업내용 (확정/변경) 종합 심의 결과서(제25조 및 제26조 관련)

사업명		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		발주부서	대중교통과
추진 단계명	확정 심의	☒ 발주 전 ☐ 계약 전		확정요청번호	20251105-05
	변경 심의	☐ 분석 ☐ 설계 ☐ 구현 ☐ 시험		변경요청번호	
제 목		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과업내용 확정 심의			
심 의 일 자		2025년 11월 5일		심 의 장 소	서면심의
심 의 결 과		☒ 승인 ☐ 불가 ☐ 조건부 승인			
[검토의견] 『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』의 제안요청서(과업지시서), 산출내역서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, 과업내용 및 사업금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산출 되었으므로 과업내용을 원안과 같이 승인함. ※ 기타 의견 - 향후 센터장비 및 현장장비 목록 식별 및 유지관리요율(금액) 등 산출내역 보완 권고 -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하니 행정효율 및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검토 권고					
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. 2025년 11월 5일 위 원 권 상 욱 (서명) 위 원 조 창 희 (서명) 위 원 이 상 수 (서명) 위원장 강 복 순 (서명) 김해시장 귀하					

※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[별지 제11호서식]

과업내용 (확정/변경) 종합 심의 결과서 (제25조 및 제26조 관련)

사업명		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		발주부서	대중교통과
추진 단계명	확정 심의	☒ 발주 전 ☐ 계약 전		확정요청번호	20251105-05
	변경 심의	☐ 분석 ☐ 설계 ☐ 구현 ☐ 시험	변경요청번호		
제 목		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과업내용 확정 심의			
심 의 일 자		2025년 11월 5일		심 의 장 소	서면심의
심 의 결 과		☒ 승인 ☐ 불가 ☐ 조건부 승인			
[검토의견] 『2026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』의 제안요청서(과업지시서), 산출내역서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, 과업내용 및 사업금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산출 되었으므로 과업내용을 원안과 같이 승인함. ※ 기타 의견 - 향후 센터장비 및 현장장비 목록 식별 및 유지관리요율(금액) 등 산출내역 보완 권고 -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하니 행정효율 및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검토 권고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. 2025년 11월 5일 위 원 권 상 옥 (서명) 위 원 조 창 희 (서명) 위 원 이 상 수 (서명) 위원장 강 복 순 (서명) 김해시장 귀하					

※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[별지 제11호서식]